제84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정(강화) o (마약) 브로르핀, 메토니타젠, 올리세리딘을 마약으로 지정 o (향정) 2시-엔 등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▶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	1.비중요
2	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연수교육관련 세부사항(강화) o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사전교육 외 연수교육도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* 마련 * 연수교육 과정(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등), 교육시간(20시간), 교육방법(온라인 교육시 운영계획 수립 등) 등 ▶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,제9조,제12조	1.비중요
3	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 변경(강화) o (적용범위) DSR 적용 대상 대출에 카드론 포함 o (산정만기) 신용대출·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만기를 대출종류별 평균만기로 변경 ▶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7의2	1.비중요
4	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액체 소화약제의 함유제한물질 추가(강화) o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과불화옥탄산 함유금지 명문화 ▶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	1.비중요
5	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안전·보건관리상태 보고서 서명(강화) o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·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는 자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→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강화 ▶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(신설) o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한을 70%로,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는 동 비율을 40%로 적용 ▶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2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(강화) o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 ▶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3.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(강화) o 향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 허용 ▶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7	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(신설) o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한을 70%로,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는 동 비율을 40%로 적용 ▶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39조의2 2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(강화) o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 ▶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39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(강화) o 향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 허용 ▶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39조의2	
8	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(신설) o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한을 70%로,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는 동 비율을 40%로 적용 ▶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2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(강화) o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 ▶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3.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(강화) o 향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 허용 ▶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9	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(신설) o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한을 70%로,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는 동 비율을 40%로 적용비율을 40% 이내로 적용 ▶보험업감독규정 제7-5의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(강화) o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 ▶보험업감독규정 제7-5의2 3.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(강화) o 향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 허용 ▶보험업감독규정 제7-5의2	
10	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(신설) o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한을 70%로,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는 동 비율을 40%로 적용 ▶은행법 시행령 제20조 2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(강화) o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 ▶은행법 시행령 제20조 3.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(강화) o 향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 허용 ▶은행법 시행령 제20조	1.중요 2.중요 3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 변경(강화) o (적용범위) DSR 적용 대상 대출에 카드론 포함 o (산정만기) 신용대출·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만기를 대출종류별 평균만기로 변경 ▶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	1.비중요
12	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 변경(강화) o (적용범위) DSR 적용 대상 대출에 카드론 포함 o (산정만기) 신용대출·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만기를 대출종류별 평균만기로 변경 ▶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	1.비중요
13	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 변경(강화) o (적용범위) DSR 적용 대상 대출에 카드론 포함 o (산정만기) 신용대출·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만기를 대출종류별 평균만기로 변경 ▶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의2	1.비중요
14	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 변경(강화) o (적용범위) DSR 적용 대상 대출에 카드론 포함 o (산정만기) 신용대출·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만기를 대출종류별 평균만기로 변경 ▶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의3	1.비중요
15	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(기획재정부)	1.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적용 국가기관 및 사무의 범위(신설) o (국가기관 범위) 세무사별로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시점까지 실제로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설정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- 파견, 휴직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 및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 o (사무범위)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조세관련 처분, 세무조사,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으로 규정 ▶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3,제14조의4제14조의5	
16	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기본징수율 산정 방법(강화) o 중앙지상파, 종편·보도PP 사업자의 조정계수를 0.9234 → 1로,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,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는 조정계수를 0.9234 → 0.931로 변경 ▶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2.최종징수율 산정 방법(강화) o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감경율을 지상파 직접수신비율을 반영하여 인하(14.23%→11.67%) ▶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5조	1.비중요 2.비중요
17	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개정안 (환경부)	1.시료채취 지점 확대(강화) o 기존 분류(개별 사업장/재개발 사업장)를 실내작업과 실외작업으로 개편,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의무를 재개발 사업장→모든 작업장으로 확대 등 일부 측정지점범위 재편 ▶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4조	1.중요